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62

발의연월일: 2025. 1. 31.

발 의 자:이언주·장종태·박민규

민병덕 · 허성무 · 정진욱

김현정 · 조계원 · 강준현

이광희 · 이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여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입주가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분양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총사업비에 과도한 분양홍보관 비용을 포함시켜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8조의4제5 항 신설).
- 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 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8조의4제6항 신설).
- 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 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4제7항 신설).
- 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함(안 제28조의6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 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 관(분양 대상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 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8조의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입주업체 등의 위법한 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
		<u>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u>
		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
		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⑥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⑦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로서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안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

<신 <u>설></u>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니하고 분양홍보관(분양 대상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 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가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신 설>

업체에 대한 입주적합업종 해 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 점검하여야 하고, 입주업체 등 의 위법한 행위가 인정될 때에 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위법한 행위 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실 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 한다.